

[서식 제12호]

접수공무원의 수입인 신분확인 인

## 위 임 장

위임받은 사람

성 명: 박처인

주민등록번호: 800101 - 1234567

주 소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101동 101호

위임인 김기흥는(은)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박처인에게 위임합니다.

- 다 음 -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에 따라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

2025 . 11 . 1 .

위임인 성 명: 김기흥 (서명인)

주민등록번호: 900101 - 2234567

주 소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,  
101동 101호

전 화 번 호: 010-1234-5678

○ 첨부서류

1.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.

◇ 유의 사항 ◇

-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 또는 제23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- ‘접수공무원의 수입인 신분확인란’은 접수공무원이 수입인인 출석자의 신분증을 통하여 수입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공무원이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.